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증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규제개혁 종합지침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주민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여 수입증지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 : 안 제8조, 제10조, 제14조
수입증지는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수입증지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함.
- 판매인 신청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 : 안 제10조 제1항
수입증지 판매인 신청시 수입증지 판매인에 부과되는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하기 위해 판매인 인감증명 제출제도를 폐지함
- 수입증지 판매인 결격요건 및 의무사항규정 정비 : 안 제11조
판매인의 결격요건 규정(종전 제15조)은 현실성이 없는 규정으로 폐지하고 판매인 승계제도와 의무사항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3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여 행정 편의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8조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등”으로 개정한 내용은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약정을 요구한 것이었으나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이며, 조례 제8조 제3항의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사항으로 행정 편의적인 조항의 폐지는 당연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 증지 판매인 결격요건 규정은 사경제활동에 대한 현실성 없는 규제규정으로 주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전규제와 행정 편의적인 규제는 개혁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폐지하여야 된다고 보며 개정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